

#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번호	16-5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1. 건 명

-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 흥익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## 2. 제안 이유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 3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구역 개요

### 1) 공원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
- 면 적 : 2,281㎡
- 추진경위
  - 2014. 10. 8. : 흥익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계획(안) 방침(구청장)
  - 2015. 2. 6. : 흥익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재조성 계획 방침(부구청장)
  - 2015. 3. 26. :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
  - 2015. 5. 14. :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
  - 2015. 7. 20. :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
  - 2015. 4. 3. ~ 9. 29. :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
  - 2015. 10. 26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
  - 2015. 11. 12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
  - 2015. 12. 10. ~ 24. :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(14일간)

#### 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
##### 1)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(안)

시설명	시설의 종류 (공원의 세분)	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기 정	변 경		기 정	변 경	증·감		
공원	어린이공원	문화공원	마포구 서교동 359	2,218	2,230.1	증)12.1	건고299 (1963.4.26)	홍익공원

※ 1967. 4. 7. 구획정리에 따른 공원 면적 증가(12.1㎡)

##### 2) 공원 변경결정(안) 사유서

시설명	내 용	변 경 사 유
홍익공원	공원시설의 세분 - 당초 : 어린이공원 - 변경 : 문화공원	- 전문 교육시설(대학) 입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상업시설과 밀접하고 어린이 이용이 전무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공원을 지역을 알리는 관광 및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

#### 5. 변경 사유

- 본 대상지는 건설부고시 제299호(1963.04.26.) 최초 공원결정 되었으며,
-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고 상업시설과 밀접한 홍익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재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을 하여 홍대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관광 명소 및 이용시민들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함
-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(변경) 할 예정임

#### 6.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

- 공람기간 : 2015. 12. 10. ~ 2015. 12. 24.(14일간)
- 공람장소 : 시구보, 2개 일간지
- 공람의견 : 주민 - 별도의견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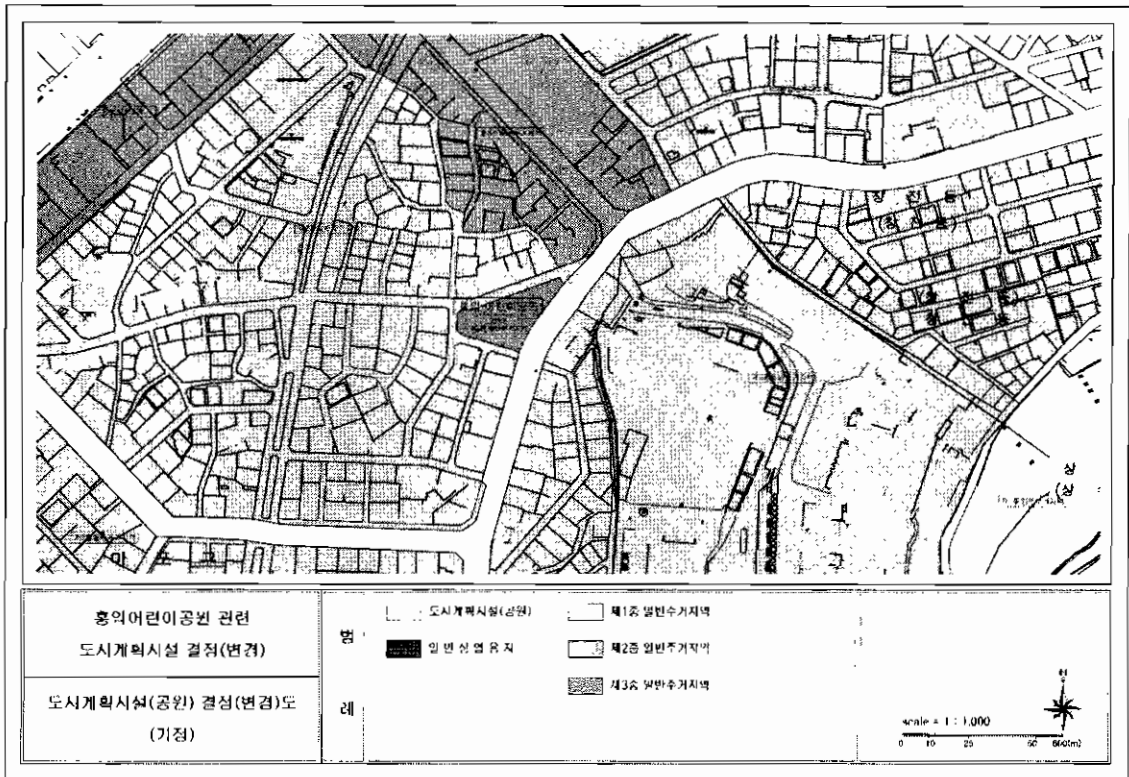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시설계획과 - 어린이공원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

서울시 공원조성과 -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서울시도시공 원위원회(소위) 사전자문을 득하기 바람

붙 임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도. 끝.

# 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도

○ 기 정 : 어린이공원



○ 변 경 : 문화공원

